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설정 연구

유지웅

목 차

제1장 서론	121
제1절 문제의식	121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3
제2장 아동학대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125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125
제2절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127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개입	132
제3장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137
제1절 아동학대 대응 주체	137
제2절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역할	140
제3절 경찰의 주요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143
1. 경찰의 주요 역할	143
2. 대응단계별 경찰의 임무	147
3. 메릴랜드 경찰의 아동학대 사전조사 절차	150
제4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151
1. 다기관협력체계	151
2. 아동지원센터	152
3.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합동조사	154

4.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업무협약과 합동조사활동의 실제: 미시간주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	156
제5절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전담조사반	160
제6절 미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162
제4장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164
제1절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대응철학	164
1. 아동학대 발생 실태	164
2. 아동학대 대응 철학	165
제2절 아동학대 대응 경찰의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166
1. 아동학대 대응 경찰의 역할	166
2. 지역경찰의 초기 대응과 임무	168
제3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171
1. 지방정부당국의 역할	171
2. 경찰 아동학대조사반(CAIU)의 역할	173
3. 아동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검토협의회	177
4.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179
5. 지방정부당국과의 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181
제4절 영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181
제5장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183
제1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 비교 분석	183
1. 학대 정황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동행 출동	186
2. 학대위험·우려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	187
3. 유관기관 협력 지원	190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부처 활동 협조	191

제2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 평가 192

제6장 개선대책 196

1. ‘범죄로서의 아동학대’ 행위 명확화 196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응급조치 대상 범위 확대 197

3. 유관기관 협력 지원 임무의 원칙 필요 198

4.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 마련 199

5. 가출상태 아동 대상 학대피해 여부 모니터링 200

6. 경찰의 무단결석 아동 관리 근거 법안 마련 201

7. 학대전담경찰관 인력 충원 202

제7장 결 론 203

참고문헌 206

그림 목 차

〈그림 5-1〉 아동학대 대응 학대전담, 학교전담, 여청수사팀 협업체계 184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가정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에도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이뤄지는 데에는 한계와 장애가 존재했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폭력이 외부에 드러나기도 어려웠거니와 설령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심의 전통적 사고체계는 국가와 사회의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왔다.¹⁾ 더구나 학대의 피해가 아동인 경우는 더욱 드러나기 어려웠다. 가정 내에서 아동은 보호자의 훈육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쉽게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라는 인식, 아동학대에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난 후의 일이다. 1998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이 제도화된 후,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제2차 전부 개정을 통해 비로소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규정과 공적 개입이 시작되었다.²⁾

아동학대가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방식을 둘러싼 논의들도 최근에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흐름은 지난

1) 이찬엽,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제1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48쪽.

2)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0, 407-408쪽.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한 개입방식과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을 통한 개입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사회복지적 접근의 기본틀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한편, 후자는 아동학대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형사사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방식에서도 사회복지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흐름과 형사사법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전자는 그 개입주체로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후자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서로 그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가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아동학대는 사회복지적 접근이나 형사사법적 접근, 그 어느 한 가지 접근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 아동학대는 단지 형사사법적 접근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성,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수성과 ‘원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가치의 문제가 있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 그러한 까닭에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는 사회복지적 접근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적 접근도 요구된다. 즉, 아동학대 사안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복지서비스와 형사사법기관의 수사활동이 모두 필요하고, 더 나아가 두 기관의 협력적 관계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두 기관의 요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경찰관의 현장 동행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 사안에서 두 기관의 협력적 관계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사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외에도 지역사회 의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등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다분야적 협력관계를 요구한다. 아동학대는 한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

라 지역사회의 문제인 것이고, 그 해결책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력적 관계의 기본틀이 마련되었지만, 일찍이 아동학대 문제에 국가와 사회가 공동 대응해 온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사안을 전적으로 다루는 학대전담경찰관이 구성된 것은 올해 초의 일이다.

경찰에 새로 도입된 학대전담경찰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협력적 관계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찍이 아동학대 사안에 다기관 협력적 대응을 해 온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역할 모델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일찍이 대응해 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적 대응, 더 나아가 관련 유관기관들간의 다분야 협력적 대응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살핌으로써, 국내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모형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주요 역할과 구체적인 임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 주무기관과 경찰의 대응 단계별, 대응 사안별 협력관계와 상호 역할

과 임무의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구체적 내용과 협력의 방식을 살피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갖는다.

- 1)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상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 2) 미국과 영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각 대응주체별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 특별히 아동학대 전담경찰은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사안별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가?
- 3) 미국과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방식이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 4)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의 특징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응한 선진국 경찰의 사례연구로서 연구방법상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 주요 문헌자료는 법 집행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및 경찰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공식문서와 매뉴얼, 지침, 지역 아동학대 프로토콜, 주 아동학대 관련 법규 등이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Child Abuse나 Child Maltreatment (혹은 Child Mistreatment)로 번역된다. ‘abuse’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처우하는 행위’ 혹은 ‘화가 나서 하는 매우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의미하며,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물을 나쁜 목적으로 또는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abuse’ 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 유형과 구별되어 ‘방임’(neglect)은 이러한 학대 유형들을 가져오는 원인 요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임’을 학대의 원인 요인이 아니라, 학대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학대’와 ‘방임’을 포괄하는 용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우’(maltreatment, mistreat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아동학대라는 용어사용에 혼란이 있듯이,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아동학대는 매우 복잡한 사회현상으로서 그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나름의 특성이 있다. 첫째는 학대행위는 쉽게 관찰할 수 없다. 학대행위는 대개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상황이 파악되거나 재구성된다.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학대행위의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

른다. 둘째로, 학대행위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 종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유형을 분류하기가 어렵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과 같은 서로 그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하위유형을 이룬다. 이러한 하위유형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로, 문화에 따라서 특정 행위에 대한 수용도가 다르다. 어떤 사회에서는 학대행위로 인정되는 일탈행위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은 오늘날 만족할 만한 정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법에서의 법률적 정의이다. 법률상의 정의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실의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다.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는 관련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 정의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정의는 학계에서의 일반적 정의를 따라 학대유형의 범위를 정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의 목적상 학대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로서, 그 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학계의 아동학대 정의가 학대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학대의 유형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국내 아동학대 관련법에서의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학대유형과 학대 주체에 제한하여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절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동법 개정은 지난 1990년대 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학대아동 문제에 대응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새로운 근간을 형성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아동 및 가족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사법적 접근이 그것이다. 다수의 아동학대 사안은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해 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요구한다.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은 곧 아동학대에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이다. 즉, 아동학대 사안은 사회복지기관의 개입만으로 그 필요가 채워지는 아동학대 사안과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 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은 해당 사안에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안 가운데,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즉, 범죄행위가 있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와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구분의 모호성이 있다. 그 원인으로는 공적 아동보호체계가 형성된 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적 요인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훈육의 한 형태로 용인했던 전통적 사고방식의 잔존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의 모호성은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과연 어떤 아동학대가 범죄행위인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학계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 개념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그 개념이 포함하는 학대 유형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결국 어떠한 아동학대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이 규정한다.

법률상 아동학대를 최초로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 등, 즉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와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1조(벌칙)에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와 방임 행위는 각각 벌칙조항이 있는 금지행위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아동학대 유형은 범죄행위로 포함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법의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동학대’와 구별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아동학대범죄’ 개념을 추가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 권리행사 방해, 사기와 공갈, 손괴 등의 죄와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제17조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 상습범의 죄를 포함한다. 즉, 그것은 새로운 범죄유형으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기존의 상해죄나 폭행죄 또는 강간죄 등의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괄해서 아동학대범죄로 범주화하고 있는 것이고,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는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것이다. 결국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고스란히 아동학대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는 서로 차별성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상으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연구자들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그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한다. 강동욱(2014)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를 위한 측면에서의 아동학대는 그 유형과 범위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아동학대의 개념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³⁾ 아동보호의 측면에서 아동학대는 넓게 정의되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다소 불명확한 경우도 허용되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는 형벌최소성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3)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법학연구소, 2014, 169쪽.

4)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47쪽.

구체적으로, 동법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제17조)를 위반한 경우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들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성규(2014)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개념이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⁵⁾ 김혜경(2010)도 정서적 학대의 경우 ‘정서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워 그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법률을 통해서 예견할 수 없다는 점을⁶⁾ 들어 그 개념상의 불명확성을 비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조항의 현실성과 적용가능성도 비판의 대상이다.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문제이다. 동법 금지행위 조항과 벌칙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학대 사안의 특성상 형사처벌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 대신에 보호절차를 통해 원가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거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혜경(2010)은 이러한 금지행위들이 국내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현실성과 적용가능성,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⁷⁾ 이호중(2013)은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⁸⁾

5) 김성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정의 및 재범방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14, 31쪽;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49쪽.

6)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49쪽.

7) 위의 글, 34쪽.

8)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134-1호, 2013, 8쪽.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삭제하고, 아동학대가 범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또는 일반 형법 법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에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구분의 모호성과 아동학대 개념의 불명확성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여 미국과 영국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구분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다루는 법은 지난 1974년 제정되었다가 최근 1996년 개정된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이다. 이 법은 연방법으로서 각 주에 대한 재정지원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방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연방법에서는 주 법령의 아동학대 정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은 “아동의 사망,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 또는 성적 학대와 착취를 야기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근래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아동을 심각한 위해의 상태에 처하게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¹⁰⁾ 이러한 연방법에 기초하여 각 주법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 및 방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¹¹⁾ 이에 따라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개입하는 아동학대 사안은 ‘심각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같은 사안으로 일반화되어 있다.¹²⁾

9)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56쪽;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172쪽.

10) 42 U.S.C.A. § 5106g "Any recent act or failure to act on the part of a parent or caretaker which results in death, serious physical or emotional harm,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r "An act or failure to act which presents an imminent risk of serious harm."

11) ‘심한 신체적 학대’에 대한 정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메릴랜드 주를 예로 들면,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은 뇌손상이나 두개골 내출혈, 굼주림, 사망 위험이 있는 물리적 부상, 외관상 영구적 혹은 장기간 심각한 흉을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 부상, 어떠한 신체 기관의 기능 상실 혹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 부상 등을 의미한다.

12) 1990년대 중반에 이뤄진 Tjaden and Anhlatt(1994) 연구에 의하면, 미국경찰이 모든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한편, 영국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조사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17에 따라, 사회복지 지원 차원에서 아동에게 어떠한 결핍(need)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법 section 47에 따라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두 조사 유형에 따라 그 조사 주체를 달리하는데, 전자는 지방정부당국 사회복지부서 사회복지사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안이고, 후자는 경찰의 형사사법적 개입까지 요구되는 사안이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아동학대 사안과 형사사법적 접근이 필요한 아동학대 사안이 구분되고, 경찰의 선별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개념의 불명확성과 적용 가능성의 문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필요 적절한 개입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즉 범죄)으로서의 아동학대와 사회복지차원의 보호서비스 대상으로서 아동학대의 구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에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개입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특성은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제도적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아동 및 가족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

으로, 미국 내 5개 지역에서 발생한 1,828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경찰은 49%의 심각한 물리적 학대에 개입하고 있었고, 75%의 심각한 성적 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C. Theodore, 외, "Police Involvement in Child Protective Service Investigations :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Child Maltreatment*, Vol. 10, No. 3, August 2005, p. 224).

복지적 접근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사법적 접근이다. 개입 주체로 보면, 아동학대 대응 사회복지기관(미국은 아동보호서비스(CPS)¹³⁾, 영국은 지방정부당국의 아동사회복지부서)과 경찰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두 기관의 개입은 다분야팀(MDT's) 활동, 합동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아동학대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의 일반적 특성이다.

두 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상호 개입하는 이유는 두 기관의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CPS)는 아동의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고, 경찰은 범죄를 조사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다. 아동보호서비스(CPS)는 학대 의심 사례가 기관에 신고 되었을 때 개입하고, 경찰은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범죄행위가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조사에 개입한다. 일반적으로는 아동의 성적 학대, 심각한 신체적 학대, 그리고 심각한 방임 사례의 경우(예컨대, 굶김)에 개입이 이뤄진다. 미국 경찰은 해당 아동학대 사례에 범죄 행위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사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¹⁴⁾

두 기관의 적절한 개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CPS)와 법 집행기관(경찰)간 서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 교차 보고 규정을 두고 있다.¹⁵⁾ 일반적으로 아동 성적학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 사례는 반드시 교차 신고해야 할 학대 유형에 속한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PS)와 경찰의 조사활동은 어떤 부분에서는

13)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CPS)는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 주무기관이다. 서비스형태로서의 아동보호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약칭 CPS를 괄호안에 포함하여 표기한다.

14) P. C. Theodore, 외, "Police Involvement in Child Protective Service Investigations :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p. 226.

15) 미국 37개 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 신고된 사례를 법 집행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6개 주에서는 경찰의 사례를 아동보호서비스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글, p.226).

비슷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다르다. 두 기관의 조사행위는 모두 학대 의심사례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고 더욱 넓게는 아동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찾는 데 관심이 있고, 아동보호서비스 조사관은 아동 보호환경에서 아동의 안전을 평가하고 적절한 향후 보호 계획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하여 서로 그 성격과 접근방식이 다른 두 주체, 아동사회복지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적 개입은 아동학대의 특성상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식이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도 다양하다.

몇몇 보고서(Cross & Spath, 1998; Tjaden & Anhalt, 1994; Winterfeld & Sakagawa, 2003)들은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활동에 방해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들은 경찰이 지나치게 징벌적 개입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들은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을 회복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에 경찰이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경향도 있다. 또한 경찰은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증거 수집활동과 범죄행위 조사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에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도 있다.

반면에 어떤 연구들은 두 기관이 함께 일하는 데 따른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¹⁶⁾ 이들은 두 기관이 가지는 각자의 전문적인 기술이 두 기관의 합동 조사활동에서 상호보완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가 다분야팀(MDT's)과 같은 다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상호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 두 기관들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16) E. Slaght,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and law enforcement".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0, 2002, pp. 23-36.

어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 집행기관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조직화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두 기관의 상호 관계에 따른 장단점들에 대한 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들이 합동 조사활동을 펼치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 가운데 하나는 합동면접(혹은 팀면접)을 할 수 있다는 점, 즉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적 면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이점은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두 기관의 조사자가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각자가 보유한 전문적 조사 기법, 관점, 정보 덕분에 조사 과정은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합동 조사활동은 안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는 경찰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가정방문이나 가족들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의 합동 작업에 대한 부정적 보고로서, Walsh(1993)는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가 아동 성학대 사건을 주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아동 성학대 사건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경우, 혐의가 있다고 알려진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 아동에게 증언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알리바이를 꾸미고, 법률 자문을 확보하고, 도주할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경찰은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팀 단위로 사안을 깊이 토의하며 시간을 끄는 행태에 우려를 나타낸다.¹⁸⁾ 이러한 상황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데 익숙해 있고 조사

17) L. Jones 외, Interagency coordination in investigations of child abuse: Historical patterns and future dire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APSAC Colloquium, Orlando, FL. 2003.

단계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해 있는 경찰관에게는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들이 학대피해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지향적이고, 학대 행위에 관대하며, 가정을 보존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데 우려를 나타낸다.¹⁹⁾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들도 아동 보호 사례에 경찰이 참여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들은 경찰이 조사활동에만 익숙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소홀하다고 여긴다.

Walsh(1993)는 경찰이 아동학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욱 징벌적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들은 경찰의 이러한 태도가 범죄 피의자나 가족들을 방어적이고 비협조적이 되게 한다고 여긴다.

경찰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Shireman, Miller, and Brown의 연구(1981)는 긴급 아동보호 조치는 경찰이 피해아동을 먼저 접촉하였을 때 더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²⁰⁾

Theodore(2005) 등은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아동학대 합동 조사 활동의 효과에 관한 기 수행된 연구들을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경찰은 아동보호서비스(CPS)의 효율성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의 참여는 아동보호서비스(CPS)가 아동학대 혐의를 찾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고 결론짓고 있다.

18) 아동보호서비스 프로토콜에 따르면, 조사자는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키기 전에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S. Kinnevy, 외, Evaluation of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ve investigations to law enforcement in Florida : Ananalysis of Manatee, Pasco, and Pinellas counties. 2003.

20) J. Shireman 외, Child welfare workers, police and child placement. Child Welfare, 55, 1981, pp. 413-422.

제3장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제1절 아동학대 대응 주체

1960년대 중반 미국사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의료계와 언론매체의 압력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신고의무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는 그 동안 은밀하게 감춰져 온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주체는 경찰이었다. 그런데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²¹⁾ 미국의 각 주에서는 새로운 아동보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크게 확장했다. 이렇게 확장된 새로운 아동보호기관이 대부분의 아동학대와 방임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동보호서비스(CPS) 기관은 경찰로부터 아동보호 책임의 우선권을 떠맡았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 직원들은 피해아동을 보호관리 시설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원을 요구하고, 유일하

21) 신고의무제도는 신고사례의 급증을 가져왔다.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은 아동성 학대 신고건수는 1976년 7,559건에서 1980년 37,366건, 1983년 71,961건으로 급증했다고 추정한다(D. A. Finkelhor,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Sage, Beverly Hills, CA. 1986). The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에서도 성적 학대 사례가 1980년 42,900건에서 1986년 138,000건으로 증가했다고 추정한다. 비록 추정 발생건수는 다르지만,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후 신고사례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분명하다.

22) S. E. Martin, D. J. Besharov, Police and Child Abuse: New Policies for Expanded Responsibiliti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1991; Edward R. Maguire, "Polic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hild sexual abuse case attrition",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 32 No. 1, 2009, pp.157-179.

게 24시간 지역사회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경찰은 때때로 야간에 초기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호관리 시설에 데려가는 데 지원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경찰이 초기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경찰은 가능한 한 빨리 사례를 아동보호서비스(CPS)에 넘겨주곤 했다. 1970년대의 대부분과 1980년대 시기 동안, 경찰은 아동성학대 사례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는 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피해아동 지원기관들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조직화와 상호협력상에 문제를 드러냈다. 아동보호서비스(CPS)가 수행하는 조사의 부실 논쟁도 이어졌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서비스(CPS)가 단독으로 아동성학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아동보호 책임을 나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사회에서 조직화된 다분야 대응팀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경찰은 또다시 아동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한다.²³⁾

1990년대에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아동 사망사건이 크게 증가했는데, 아동학대 기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는 부실하며, 아동보호서비스(CPS) 기관 내에 결함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일어났다. 결국 이러한 사건의 조사책임은 경찰로 넘겨졌다.²⁴⁾

23) Edward R. Maguire, "Polic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hild sexual abuse case attrition", p. 158.

24) 가장 주목할 만한 두 사례가 아칸사스 주와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났다. 1997년 법안통과를 통해서, 아칸사스 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모든 조사 책임을 아칸사스 주 경찰 안에 새로 창설된 가족보호반(Family Protection Unit :FPU)에 이관했다. 그런데 FPU의 창설은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와 지역 경찰, 주 경찰의 역할에 관한 혼란을 가져왔다. FPU는 형사사법적 대응에 강조를 두고 있었고, 조사관 훈련은 가해 혐의자에 대한 면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아동을 면접하는 기술은 강조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할 혼란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고 기관간 협력을 위한 프로토콜 보완이 이뤄지면서 점차 누그러지고 아동학대 조사절차는 개선되었다. 1998년에는 플로리다 주에서도 심각한 학대와 방임 사례에 대한 조사 책임을 지역 카운티에 있는 보안관사무소에 넘겼다. 주 관리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사의 효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야팀 대응에서 경찰은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사례에서 경찰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바로 아동 성학대 사례 조처와 관련한 아동학대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되는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논쟁의 한쪽 편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고,²⁵⁾ 반대편에서는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²⁶⁾

결국, 형사사법시스템은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에 대응했다. 그 개혁의 내용은 아동피해자와 증인의 역할을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이다. 미국내 여러 지역에서 다분야 팀이 설치되었는데, 거기에는 아동보호서비스(CPS) 사례별 사회복지사, 경찰관, 검사가 각각 한 명씩 주요 멤버로 참여했다. 때로는 여기에 심리치료사, 의사, 아동지원자(Child Advocate)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다분야팀이 모든 아동 성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거르고, 조사했다. 때로는 다른 유형의 학대도 다루었다. 다분야 팀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에서 전문가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 협력, 이해가 증가했다는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²⁷⁾

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플로리다 주의 조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L. R. Shapiro, M. H. Maras,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Child Maltreatment*, Jones & Barlett Learning, 2016, pp. 295-322).

- 25) 예를 들면, Harshbargar(1987)는 가해자가 아동과 관련된 사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소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타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유사한 폭력행위는 범죄로 다루면서,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학대 행위 사례를 무시할 만한 법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 26)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하나는 많은 복지서비스 전문가들은 가족의 유대가 가족내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가족에 기반한 심리치료, 혹은 다른 유형의 재판전 다이버전을 선호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아동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 개입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한다. 그들은 기소는 2차적 피해 혹은 “과정이 유도하는 트라우마”(process induced trauma)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Edward R. Maguire, "Polic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hild sexual abuse case attrition", p.159).
- 27) 위의 글, pp.159-160.

제2절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역할

미국의 아동복지시스템은 단일 독립체로 이뤄지지 않는다. 각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들이 아동의 안전과 가족 보호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복지부나 아동가족서비스(CPS)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아동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민간 아동복지기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들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 시스템은 복잡적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주마다 다르지만,²⁸⁾ 미국의 아동복지 시스템상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는 주무기관은 아동보호서비스(CPS)이다.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 CPS)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조직으로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포함하여 아동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워싱턴 D.C.에서는 아동가족보호청(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 CFSA), 뉴욕에서는 아동보호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 ACS), L.A.에서는 아동가족보호국(Department of Children & Family Services : DCFS), 뉴저지주에서는 아동가족국(Department of Children & Family : DCF)²⁹⁾, 버지니아주에서는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으로도 알려져 있다. 즉, CFSA, ACS, DCF, DCFS, DSS 등은 모두 아동보호서비스(CPS)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아동보호서비스(CPS) 기관은 정부조직체계상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사회복지적 지향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 유지 및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결정 방식은 관리자나 법률상

28)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Children's Bureau, 2012.

29) 켈자스 주에서도 아동가족국(Department for Children and Families : DCF)으로 불리거나 구체적인 이름상의 차이가 있다.

담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아동보호서비스(CPS) 케이스워커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어 이뤄진다.³⁰⁾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주 법에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이뤄진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아동보호서비스(CPS)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서비스(CPS)로 접수되는데, 아동학대의 유형 가운데,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즉 형사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구체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각한 방임 등)는 경찰기관으로 신고가 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보호서비스(CPS)로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는 경우, 대개 아동보호서비스 워커(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걸러진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법 집행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뉴욕 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동가족서비스부(the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는 아동보호서비스법에 따라³¹⁾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는 중앙접수처(Central Register)를 두고 있다. 중앙접수처는, 핫라인이라고도 명명되는데, 주 7일 하루 24시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전화를 접수한다. 핫라인에 걸려온 신고전화에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보호서비스에 넘긴다.³²⁾ 한편, 신고가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가해 혐의자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가 아닌 경우, 또한 혐의 내용과 상황이

30) Donna Pence, Charles Wilson, *The Role of Law Enforcement in the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92, p.3

31) NY CLS Soc Serv 422(1)

32) NY CLS Soc Serv 422(2)(a)

범죄를 구성하거나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중앙접수처는 해당 사례를 즉각 법 집행기관과 지방 검사에 통보한다.³³⁾ 중앙접수처가 확보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보나 사진자료도 모두 기밀자료이다. 법이 허가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의 상황이나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타난 신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접수센터(핫라인)을 체크할 수 있다.³⁴⁾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거르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와 신고접수 이후 사례 관리(조사와 평가 등)를 다루는 사례별 사회복지사(case worker)로 구분된다.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조사원 혹은 평가 사회복지사로 불리기도 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아동보호서비스 워커에 의해 접수되고 걸러진 후에 해당 사례는 해당 지역 카운티의 아동보호서비스(CPS) 사례별 사회복지사에게 배정된다.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해당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 상황의 잠재적 심각성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대응한다.

지역에 따라서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당장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쉼터, 위탁가정, 친척집에 분리 조치할 수 있다.³⁵⁾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가족법(family Law) article title 5-700에 근거하여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사회복지부서 직원(사례별 사회복지사)이 아동을 가정에서 임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³⁶⁾ 메릴랜드 카운티에서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

33) NY CLS Soc Serv 422(2)(C)

34) A Guide to New York's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2014

35)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Children's Bureau, 2012.

36) Child Abuse & Neglect Investigation, Anne Arundel County Police Department, 2015.

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가택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이 동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택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소년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해당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한 경우, 의사를 통해서 아동을 진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³⁷⁾ 그러나 캔사스 주의 경우, 아동가족국 (Department for Children and Families : DCF) 사회복지사는 법원 명령이 없이는 아동을 발견 장소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단지 아동가족국 (DCF)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당장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경찰관을 접촉할 수 있다.³⁸⁾ 이와 같이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명령 없이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제3절 경찰의 주요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1. 경찰의 주요 역할

미국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보호서비스(CPS) 단독 개입으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경찰의 개입이 이뤄지는 경우는 신고가 된 아동학대 사례에 범죄행위 의심이 있는 경우, 즉 ‘범죄로서의 아동학대’ 사안이다.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에는 성적 학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 그리고 심각한 방임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

37) 위의 글

38) A Guide to Reporting Child Abuse & Neglect, Kansas Department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3.

(CPS)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찰이 개입하는 성적 학대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사건이다. ‘심한 신체적 학대’에 대한 정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메릴랜드 주를 예로 들면,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은 뇌손상이나 두개골 내출혈, 굶주림, 사망 위험이 있는 물리적 부상, 외관상 영구적 혹은 장기간 심각한 흉을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 부상, 어떠한 신체 기관의 기능 상실 혹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 부상 등을 의미한다.³⁹⁾

경찰이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다른 경우는 학대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 아닌 타인이거나 가정 밖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이다. 아동보호서비스(CPS)는 이러한 경우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CPS)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개입하고, 타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례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미국 내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이 모든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응하게 하기도 한다.⁴⁰⁾

아동학대 사례에서 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⁴¹⁾ 첫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이다. 경찰은 공공안전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 주체로서의 역할이다. 지역사회에서 경찰관은 기본업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가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39) Child Abuse & Neglect Investigation, Anne Arundel County Police Department, 2015.

40)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Children's Bureau, 2012, p2. 각주 2).

41) Donna Pence, Charles Wilson, *The Role of Law Enforcement in the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1992, pp.5-7.

에 마주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전화에 응대하거나 마약 복용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증거들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찰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CPS)에 신고가 된 아동학대 의심신고의 16%는 경찰의 신고에 의한 것이다.⁴²⁾

세 번째는 아동보호서비스(CPS) 활동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다. 근래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와 경찰의 협력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때때로 사례별 사회복지사들은 외딴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그런데 사례별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자기보호를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은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와 동행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은 조사지역, 조사시간(특히 야간), 조사대상자들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와 동행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권위는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의 권위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아동 대면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지만, 사회복지사에게는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접근조차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은 어떠한 법원의 지시를 집행하는 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아동보호서비스(CPS) 사례별 사회복지사로부터의 경찰 지원요청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자주 일어난다. 미국 46개 주에서는 경찰관에게 법원의 명령 없이도 아동을 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약 20개의 다른 주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대개 경찰의 지원이 없이는 아동을 강제적으로 가정에서

42) 위의 글, p.6.

분리하는 시도는 취해지지 않는다.

네 번째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주체로서의 역할이다. 경찰관은 때때로 아동보호서비스(CPS)보다 더 빨리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하루 24시간 대응할 수 있으나, 아동보호서비스(CPS)의 경우 어떤 지역에서는 정규 근무시간 이후 대응은 제한된다.

다섯 번째는 범죄행위 조사자의 역할이다.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형사사범 조사기관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안 가운데 성폭행, 심각한 신체적 부상, 심각한 방임 등 ‘범죄로서의 아동학대’ 사안을 다룬다. 이러한 사안들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와 합동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 여기에는 아동 살인, 시설에서의 학대, 상업적 아동 포르노, 조직적인 성적 착취 등의 경우가 포함된다.⁴³⁾

여섯 번째는 피해자 지원자의 역할이다. 피해자 증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경찰관이 기소경험을 통해 아동 피해자 지원과 준비를 돕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일에는 재판장에서 각 사람이 맡은 역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재판 전에 아동을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학대 사안에서 경찰이 맡은 여러 역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조사자 역할이다. 아동학대 사례 조사는 소수의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이 맡는다. 학대 사례 조사가 아닌 상황에 경찰이 아동보호서비스 활동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순찰경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⁴⁴⁾

43) 상업적 아동 포르노의 경우, FBI와 경찰관이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인 성적 착취의 경우에도 여러 주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FBI가 관여한다.

44) P. C. Theodore, 외, 2005, p.226.

2. 대응단계별 경찰의 임무

아동학대 사례에서 경찰의 임무는 초기 신고접수 단계부터 조사단계, 법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형사법상의 범죄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범죄자를 확인하여 체포하며, 적절한 형사상의 기소를 제기한다. 그밖에도 사건에 개입된 아동, 가족, 관련 기관들을 지원한다.⁴⁵⁾

가. 신고접수 단계

아동학대 사례가 경찰에 인지되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동보호서비스(CPS)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이관(연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가족, 이웃 등 기타 관련자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경우이다.

나. 아동학대 조사단계

1)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및 분리 조치⁴⁶⁾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한다. 조사 단계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은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접촉한다. 만약 부모가 아동을 가해 혐의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은 이러한 정보를 아동보호서비스

45) Eric H. Holder Jr. 외,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Child Abus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 2014, pp.1-5.

46) L. R. Shapiro, M. H. Maras,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Child Maltreatment*, p.299.

(CPS)에 통보한다. 만약 아동보호서비스(CPS)가 사례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라면, 경찰관은 그들과 어떻게 조사를 꾸려나갈 것인지를 상의한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고자 한다면, 아동보호서비스 사례별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 사전에 만나 처리 계획을 논의한다.

경찰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각 주별로 가이드라인이 있고 해당 부처의 정책 및 절차가 다를 수 있는데, 미국 대부분의 주 법은 경찰관이 관찰한 사실과 수집한 정보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⁴⁷⁾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는 지역별로 그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의 협력을 통해서 아동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경찰관이 아동보호서비스(CPS) 사례별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동 분리와 관련한 지원 요청을 받는 경우, 가능한 한 트라우마가 적고 아동과 사회복지사에게 위험이 적도록 신속하게 아동을 분리할 책임이 있다.⁴⁸⁾

2) 증인, 피해자, 피의자 인터뷰⁴⁹⁾

경찰은 증인,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인 범죄정보와 상황적 증거를 물색한다. 목격자 증언 혹은 피의자의 자백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구성한다. 또한 상황적 증거는 주어진 사실의 진실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최고의 상황증거는 범죄 동기를 제공하는 증거이다.

47) 한편, 어떤 관할 구역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가 노출되었거나, 그러한 학대 의심이 들거나, 혹은 학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경찰관은 아동을 분리할 의무를 갖는다(Eric H. Holder Jr. 외,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Child Abuse*, 2014, p. 9).

48) 위의 글, P. 9.

49) L. R. Shapiro, M. H. Maras,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Child Maltreatment*, pp. 299-301.

가) 증인 인터뷰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가해 혐의자가 아니라면, 경찰은 피해자에 관한 정보, 학대 사실에 대한 정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인터뷰 한다. 그러나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가해 혐의자라면, 가해자가 아닌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가해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다.

나) 피해자 인터뷰

피해 아동을 인터뷰하기 전에 경찰은 그들의 부모에게 아동이 학대 피해의심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이러한 원칙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그 부모가 가해 혐의자인 경우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인터뷰는 특별히 제작된 인터뷰 룸에서 이뤄진다. 인터뷰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중립적인 위치이다. 대개 경찰관과 아동보호서비스(CPS) 사례별 사회복지사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피해 아동을 합동으로 인터뷰하는 것이지만, 형사사법 기소가 예상될 때에는 경찰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 검사가 초기 인터뷰를 모니터링하고 가해 혐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어떤 관할지역에서는 지방검사가 피해 아동을 인터뷰하기도 하는데, 형사범죄 기소가 예견될 때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터뷰가 녹음되어 지방검사 사무실에 보내지거나 지방 검사가 단방향 거울을 통해서 직접 지켜보기도 한다. 인터뷰의 구체적인 절차는 주, 카운티, 시 규정과 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다) 피의자 인터뷰

피의자 인터뷰의 목적은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받고, 가해혐의자가 알려진 경우, 경찰관은 혐

의자에 관한 경찰기록과 다른 기록들을 체크한다. 또한 경찰관은 혐의자로부터 DNA 표본을 확보하는데, 만약 혐의자가 과거 범죄전력이 있다면, 그의 DNA 표본은 이미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에 보관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방, 주, 연방차원에서 DNA 프로파일 저장과 검색을 허용하고 있다.

3) 증거수집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경찰은 사례에 관련된 증거 수집에 나선다. 범죄현장을 처리하는 첫 번째 절차는 현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조사자는 현장 통제에 책임이 있다. 현장의 경계선이 확정된 후에는 출입통로는 하나만 만든다. 그리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한다. 응급요원이나 경찰관의 행동(예컨대 문을 여는 행위)으로 인한 범죄현장의 변화는 기록하고 조사자/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메릴랜드 경찰의 아동학대 사전조사 절차⁵⁰⁾

메릴랜드 주의 경우, 주 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는 경찰과 지역 사회복지부서의 공동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관은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필요 여부를 평가한다. 경찰관은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회복지 부서와 첫 대면이 없이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한다.⁵¹⁾

50) Child Abuse & Neglect Investigation, Anne Arundel County Police Department.

51)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관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회복지 부서와 접촉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보호소로 데려가 임시 조치(쉼터, 의료조치)를 실시한다.

사전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신체상의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증거에는 학대에 사용된 도구나 물건이 포함된다. 조사관은 아동에게 물리적 학대를 당한 눈에 띄는 흔적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둔다.

사전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관은 보고서 작성을 준비한다. 관련법은 24시간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사례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아동 및 취약성인 학대반」(Child & Vulnerable Adult Abuse Unit) 관리자의 확인절차를 거친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부모, 가족 구성원, 혹은 보호자나 감독 책임자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조사관은 사회복지 부서와 CID major Crimes Section Child & Vulnerable Adult Abuse Unit을 접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ID Major Crimes Section 성범죄반(Sex Offense Unit)을 접촉한다.

제4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1. 다기관협력체계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동학대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떠한 단일기관도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만한 훈련, 인력, 자원,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이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을 때, 이상적인 대응은 의사가 부상(상처)을 치료하고, 심리치료사가 아동을 상담하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돕고, 법 집행관이 가해자를 체포하고,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대응은 이 사안에 개입하는 기관과 조직들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응하여 서로 협력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하다.⁵²⁾ 따라서 아동학대 사안에는 사회복지사, 의사, 치료심리사, 피해자/증인 서비스 제공자, 검사, 판사, 그리고 법집행관(경찰관)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내 수백 개의 지역에서는, 법 집행기관과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응하여 구성된 공식적인 다분야팀 안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이룬다. 다분야팀 안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서로 조사를 이끌고, 중복적인 인터뷰 활동을 피하고, 의사결정에 협력한다. 다분야 협력팀에서 법집행기관과 아동보호서비스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전문가들로서 의료기관요원,⁵³⁾ 피해자/증인 서비스 제공자, 정신건강 복지사, 검사 등이 참여한다.

2. 아동지원센터

이러한 다분야팀 활동의 핵심포인트는 팀 단위 인터뷰 활동에 있다. 팀 인터뷰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개별 면접자들이 해당 아동을 중복적이고 불필요하게 여러 번 면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지원센터(child advocacy center: CAC)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응한 다분야 팀 활동에 중요한 기관이다. 아동지원센터(CAC)는 병원 내에 설치되거나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아동 대상 범죄를 조사하는 독립 시설로서 설치되고 있다. 아동지원센터(CAC)의 우선적인 목표 가

52) Eric H. Holder Jr. 외,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Child Abuse*, 2014, pp. 2-5.

53) 의료계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다루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내과 의사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학대로 인한 부상(상처)를 처치할 뿐만 아니라, 조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지역사회의 다분야 팀의 중요한 멤버이다. 그들은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자를 돕는다.

운데 하나는 포렌식 인터뷰 과정을 개선하여 아동이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 의료전문가, 경찰이나 검사 등으로부터 면접을 받는 횟수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또 다른 목표는 한 명의 면접자가 다분야팀 구성원들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CPS), 경찰, 의료전문가, 기타 기관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조사를 조직화하는 것이다.⁵⁴⁾

켄사스 주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특별히 성적학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가족국(DCF)⁵⁵⁾, 경찰, 검사, 심리치료사, 의료기관 종사자, 피해자 지원자들을 포함하는 전문가 팀이 아동지원센터(CAC)에 한 데 모인다. 아동지원센터(CAC)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포렌식 인터뷰가 실시된다. 인터뷰는 훈련된 면접원에 의해서 아동 친화적으로 꾸며진 방에서 이뤄진다. 피해자 지원자(victims advocate)들은 아동을 전문적인 정신건강 센터에 연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도움을 줄만한 자원을 물색해 준다.⁵⁶⁾

인터뷰가 종료된 후 다분야팀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관찰한 것을 평가하고 사례 개입여부와 개입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인터뷰에서 드러난 정보에 기초하여, 경찰관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러 나설 수도 있고, 범죄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다분야팀 안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와 경찰은 범죄혐의자 합동조사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54) L. R. Shapiro, M. H. Maras,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Child Maltreatment*, p. 298.

55) 아동가족국(DCF)는 켄사스주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56) A Guide to Reporting Child Abuse & Neglect, Kansas Department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3.

3.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합동조사

아동학대에 대응한 다기관협력체계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의 협력은 아동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중요하다. 경찰관과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조사과정에서 공동대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공동으로 포렌식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응한 다기관협력체계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 간의 합동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아동학대에 범죄행위가 포함된 경우를 포함하여 심각한 아동학대 사안이다.

켄사스 주의 경우, 아동가족국(DCF)와 경찰의 합동조사가 이뤄지는 아동학대 사례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상처) 혹은 손상이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는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⁵⁷⁾

한편, 미시간주 아동보호법은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가 경찰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데,⁵⁸⁾ 그것은 ▶ 학대와 방임이 아동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이 성적 학대 혹은 성적 착취 피해 의심이 있는 경우, ▶ 아동학대와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가져온 경우⁵⁹⁾, ▶ 아동, 복지부 직원, 혹은 조사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법 집행관(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아동에게 부상을 입힌 가해 혐의자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 아동이 각성제(methamphetamine) 생산에 접촉하거나 노출된 경우 등이다. 동 법에

57) A Guide to Reporting Child Abuse & Neglect, Kansas Department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3.

58) MCL, 722.628(3)과 (4)

59) 여기에서 심각한 신체적 부상은 의학적 치료 혹은 입원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을 의미한다.

따르면,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는 위와 같은 상황을 한 가지 이상 인지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지원과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경찰관이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와 협력해야 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캔사스와 미시간 주의 경우에서처럼, 아동학대 조사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합동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아동보호서비스(CPS)가 조사해서는 안 되는 사례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시간 주 아동보호법에서는 학대 혐의자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동보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CPS)는 해당 사안을 조사해서는 안 되고 즉시 해당 사례를 적절한 법 집행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⁶⁰⁾ 뉴욕 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뉴욕주 아동보호서비스법은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가해 혐의자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 중앙접수처는 해당 사례를 즉각 법 집행기관, 지방 검사에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⁶¹⁾

미국에서 아동학대에 대응한 기관간 협력은 어느 정도나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 2009년 워싱턴 D.C. 지역의 아동학대 조사 시행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⁶²⁾ 2009년 시기 아동학대 사례 190건 가운데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사례는 30건으로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30건의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 사례 가운데 경찰(MPD's Youth Division: MPD YD)과 아동가족보호청(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CFSA)의⁶³⁾ 합동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26건(87%)으로 조사되

60) MCL 722.623(6)

61) NY CLS Soc Serv 422(2)(C)

62) An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vestigative Practice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2010.

63) 아동가족보호청(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 CFSA)은 워싱턴 D.C. 지역에서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었다. 워싱턴 D.C. 지역의 경우, 아동가족보호청(CFSA)과 워싱턴 D.C. 경찰(MPD YD)의 업무협약에 따라서, 아동가족보호청(CFSA)과 워싱턴 D.C. 경찰(MPD YD)은 모든 성적 학대사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 사례에 합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⁶⁴⁾ 또한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사례 30건 가운데 아동지원센터(CAC) 합동면접이 이뤄진 사례는 5건(17%)이었다. 2009년 당시 워싱턴 D.C. 지역의 경우, 아동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뷰 빈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17%),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사례에 대한 합동조사(CFSA와 MPD YD) 비율은 87%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4.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업무협약과 합동 조사활동의 실제: 미시간주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

미국내 많은 지역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의 협력 조사활동에 관한 공식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⁶⁵⁾ 일부 경찰청과 아동보호서비스(CPS)에서는 공동 가정방문, 아동 공동면접, 그리고 다른 협동 조사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기관 간 협력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지역의 아동보호서비스(CPS)와 법 집행기관(경찰청)간에는 상호협력 방안을 명시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진다. 상호업무협약은 구체적으로 두 기관이 상호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공유하며, 어떻게 공동 조사활동을 펼치고, 어떠한 구두(oral) 정보와 기록정보를 서로 공유할 것인지를 구체화한다.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가정방문, 공동 면접을 시행하는 시기를 구체화한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64) CFSA Investigations Policy VII Procedure D (September 30, 2003)

65) Pence & Wilson, 1994, Tjaden & Anhalt, 1994.

그 한 예로서, 미시간주 아동보호법은 아동보호서비스(CPS)와 경찰관이 아동학대 조사 프로토콜에 따라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⁶⁾ 이 절에서는 미시간주의 아동학대 대응 모델 프로토콜을 통해서 아동학대 조사 다분야팀 주요 주체(기소검사,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 경찰)들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기소 검사

미시간주 아동학대 조사 다분야 팀에서 기소검사는 팀의 리더 역할을 맡는다. 그의 주요 임무는 (미시간주 아동학대 모델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 아동학대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다분야 팀 활동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임무 외에도, 구체적으로 해당 사례가 다분야팀 접근 방식을 요구할 때⁶⁷⁾, 기소검사는 지역 프로토콜을 따라 사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학대 기소 및 조사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나. 아동보호서비스(CPS)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임무는 학대 혐의자가 아동 보호 책임자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확보한 정보에 기초하여 아동 보호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나 방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서비스(CPS)는 ▶ 학대가 발생한 관할 지역 내 법 집행기관에 연락하고, ▶ 조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례를 지역 카운티로 보내며, ▶ 법 집행 통보양식을 작성하여 관할지역 법 집행기관과 지방 검사 사무실로 보내고, ▶ 지역 카운티에서 CPS 조사관(케이스워커)을 배정하여 조속히 관할지역 경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필드조사 결과에

66) MCL, 722.628(3)과 (4)

67) MCL 722.628 섹션 8(3)에 해당하는 사례.

근거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분류하고, ▶ 필요한 경우, 가정/소년 법원 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나 아동 보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타인이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동보호서비스(CPS)는 해당 사례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한 관할지역에 있는 법 집행기관에 연락한다.

다. 경찰

미시간주 아동학대 조사 프로토콜은 다분야팀에서 경찰의 임무를 몇 가지 상황과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최초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해당 사례를 평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찰은 ▶ 아동학대 신고자와 다른 증인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인터뷰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혐의의 최소한의 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을 면접한다. ▶ 아동학대 가해 혐의자와 학대 피해 아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 학대에 관한 아동의 언어 진술을 문서화한다. ▶ 학대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경우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다. ▶ 지정된 조사관(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전담반)에게 연락한다. ▶ 아동에게 현재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평가한다. 만약 아동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데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 아동이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있게 하고, ▶ 아동보호서비스(CPS) 접수부서에 통보한다. ▶ 아동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가정/소년법원 양식을 작성하고 사진 청구일과 관련하여 법원과 접촉한다.

그러나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 없거나 아동의 보건복지 책임을 지는 사람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 아동을 보호소로 데려가고, ▶ 아동보호서비스(CPS) 접수부서에 통보한다. ▶ 아동이 거

주하는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가정/소년법원 양식을 작성하고 사전 청취 일과 관련하여 법원과 접촉한다.

해당 아동학대 사례가 아동 보호 책임자에 의해 일어났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은 ▶ 아동보호서비스(CPS)에 전화로 통보하고 72시간 내에 문서 보고를 통해 추가 확인한다. ▶ 해당 사례가 학대나 방임이 원인이 되어 아동 사망에 이른 경우이거나 아동이 성적 학대나 착취 혐의 피해자인 경우이거나 학대와 방임으로 심각한 신체적 부상⁶⁸⁾을 초래한 경우에는,⁶⁹⁾ ▶ 조사를 위한 팀 멤버를 배정하고, ▶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 부모, 가해혐의자에 대한 초기조사 면접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서비스(CPS)와 협력하고, ▶ 팀의 다른 멤버들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동 보호 책임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은 조사절차에 들어가는데, ▶ 아동과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증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 필요한 경우, 의료조치를 취한다. ▶ 72시간 안에 발생한 성적 학대 혹은 심각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될 때는 즉시 의학적 검사를 준비하고, ▶ GTF 포렌식 인터뷰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피해자 가족 구성원(아동들을 포함해서)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 가해 혐의자를 인터뷰한다.

68) 심각한 신체적 부상은 의학적 치료나 입원을 요구하고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훼손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69) MCL section 8(3)(a),(b),(c)

제5절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전담조사반

미국의 지방경찰청에는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전담반이 조직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에 범죄 의심이 없는 경우, 초기 대응은 지역 순찰경찰이 맡지만, 해당 사례에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조사반이 개입한다. 아동학대 전담조사반의 조직 형태는 지역 별로 다르다.

워싱턴 D.C. 경찰청의 경우, 조사국(Investigation Services Bureau) 내에 청소년 가족보호과(Youth and Family Services Division)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가족보호과 내에는 6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신체적 성적 학대계(Physical & Sexual Abuse Branch), 청소년 원조 및 예방계(Youth Intervention & Prevention Branch)가 있다. 청소년 가족보호과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사, 아동 성학대와 착취에 대한 조사, 청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Internet Crime) 조사 책임을 맡고 있다. 신체적·성적 학대 조사는 다분야팀을 통해 이뤄진다.⁷⁰⁾

뉴욕 경찰청(NYPD)에서는 ‘특수 피해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성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11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뉴욕지역 외에도 다른 몇몇 지역 경찰청에도 ‘특수 피해자 전담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부서 소속 형사들은 성범죄, 아동, 노인범죄를 수사한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반(Child abuse Unit)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반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신체적 폭행 사건의

70)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아동가족보호청(Child & Family Services Agency), 아동변호센터(Child Advocacy Center), 국립아동의료센터(Children National Medical Center), 콜롬비아주 검찰청(Office of Attorney General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연방지방 검찰청(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등이다.

책임을 맡고 있다. 아동학대반 수사관은 아동이 사망한 경우 조사 책임을 가지며, 다른 아동학대와 방임 사건에서 지역경찰관을 지원할 책임을 갖는다. 아동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경찰관은 아동학대반 수사관을 부른다. 아동학대반 수사관이 사건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역경찰관이 초기 수사와 보고 준비 책임을 갖는다.⁷¹⁾

시애틀 경찰청에서는 성폭행 및 아동학대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애틀 경찰청 조사국 내에 있는 성폭행 및 아동학대 전담반은 12명의 사례 수사관과 2명의 피해자 지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담반에서는 모든 아동학대 사례(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한다. 수사관은 아동보호서비스(CPS), 의료전문가, 검사, 지원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전담반에는 성범죄자 관리를 맡는 3명의 수사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수사관들은 성범죄자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들이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⁷²⁾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 조사 전담반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아동 착취, 심각한 방임 의심사례 외에도 성 폭행과 14세 미만 아동 강간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⁷³⁾ 오레곤 주 멀트노마 카운티의 아동학대팀(child abuse team)은 지방검찰청, DHS, 아동학대 대응평가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다분야팀을 이루고 있다.⁷⁴⁾

71) http://www.slmpd.org/child_abuse.shtml

72) http://www.seattle.gov/police/units/investigations/sexual_assault.htm

73) <http://sanfranciscopolice.org/juvenile-and-family-juvenilechild-abuse>

74) <http://www.portlandoregon.gov/police/article/435145>

제6절 미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미국의 아동복지 시스템은 복잡적이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아동복지 시스템상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는 주무기관은 아동보호서비스(CPS)이다.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더불어 주 법에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이뤄진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아동보호서비스(CPS)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서비스(CPS)로 접수되는데,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서 보다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즉 형사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구체적으로 심각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각한 방임 등)는 경찰기관으로 신고가 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보호서비스(CPS) 단독 개입으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경찰의 개입이 이뤄지는 경우는 신고가 된 아동학대 사례에 범죄행위 의심이 있는 경우, 즉 ‘범죄로서의 아동학대’ 사안이다.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에는 성적 학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 그리고 심각한 방임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성적 학대와 심각한 신체적 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경찰이 개입하는 성적 학대는 일반적으로 성폭행사건이다.

경찰이 아동학대에 개입하는 다른 경우는 학대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 아닌 타인이거나 가정 밖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이다. 아동보호서비스(CPS)는 이러한 경우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CPS)는 가족 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개입하고, 타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례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아동학대 사례에서 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은 요약해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주체, 아동학대 신고 주체, 아동보호서비스(CPS) 활동 지원자,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주체, 범죄행위 조사주체, 피해자 지원자의 역할 등이다. 아동학대 사안에서 경찰이 맡은 여러 역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범죄행위 조사주체로서의 역할이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지역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의 역할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은 지방경찰청 단위에 소수의 아동학대 전담조사반 형태로 활동한다. 아동학대 사례 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경찰이 아동보호서비스(CPS) 활동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역 순찰경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제4장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제1절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대응철학

1. 아동학대 발생 실태

세계적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아동학대는 오래된 사회적 이슈이다. 실제로 오늘날 영국에서 아동학대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영국의 전국아동학대방지연합(The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은 고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진 아동의 수를 파악하고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의 수를 추정하고 있다.⁷⁵⁾ 이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영국 내에 200만 명이 넘는 아동들, 즉 18세 미만 아동의 14% 가량이 학대와 방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11년 조사에 기초하여⁷⁶⁾ 2012-2013년 두 해 동안 16세 미만 아동 73,900명이 성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고,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뤄진 2015년 보고서에서는 18-24세 연령 조사대상자의 11.3%가 18세 이하의 나이에 ‘접촉’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 교육부에서는 매년 아동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

75) S. Jütte 외, How safe are our children?, NSPCC, 2014.

76) Radford 외,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K today, NSPCC, 2011.

를 파악하여 수록한 연간 통계회보를 발간하고 있다.⁷⁷⁾ 이 통계에 의하면, 2013-14년에 영국에서 아동 사회복지 서비스에 연계된 아동 수는 657,800명이었다. 주목할 점은 그 중 거의 1/4은 경찰로부터 연계된 것이라는 점이다. 같은 해에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7의 조사’, 즉 아동학대와 방임 의심이 있을 때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서비스 부서에서 수행하는 조사를 받은 아동의 수는 142,500명이었고, 그 가운데 아동보호계획(child protection plan)대상이 된 아동 수는 59,800명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영국사회에서도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2. 아동학대 대응 철학

영국의 런던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의 안전 책임을 지고 있는 런던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경찰 직원을 위한 안내서 성격의 「아동학대조사방침」을 내고 있는데, 「아동학대조사방침」을 통해 밝히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 런던경찰청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활동에서 아동의 복지(안녕)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안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서 형사사법시스템 아래 둔다.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의 기회와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고 아동학대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다기관적 접근을 채택한다.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기관과 다른 기관들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체계를 발전시킨다. ▲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는 심각한 폭력범죄의 증거라는 원칙을 고취한다.⁷⁸⁾

77)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in England 2013-2014,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런던경찰청의 아동학대 대응 우선순위는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는 경찰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다. 그것은 영국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 보장은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으면서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원칙, 다기관 협력적 접근과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체계 확립이 강조되고 있다.

제2절 아동학대 대응 경찰의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1. 아동학대 대응 경찰의 역할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⁷⁹⁾ 하에서 경찰은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 부서 등의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지역 내에서 심각한 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견한 그러한 아동들을 지방정부당국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⁸⁰⁾

영국 정부의 아동학대 지침서인 Working Together⁸¹⁾ 어떻게 이 의무와 책임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개괄하여 밝히고 있는데,⁸²⁾ 여기에 명시된 경찰의 책임은 학대와 방임 위험 의심이 있는 아동을 확인하

78) Child Abuse Investigation Policy, Metropolitan Police, 2012.

79) 1989년 아동법은 아동에 관한 영국의 기본법으로서, 이 법은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80) In Harm's Way: The role of the police in keeping children safe, HMIC, 2016, p.20.

81) Working Together는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의 약칭임. 이 지침서는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 등 아동학대 관련부처들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지역 사회의 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82)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M Government, March 2013.

고, 아동에 대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아동 보호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런던경찰청의 「아동학대조사방침」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보호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경찰의 주요 책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범죄 예방, 범죄 발견, 아동과 가족의 필요에 대한 평가 지원, 협력기관들 및 아동지원서비스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요약된다.⁸³⁾

아동학대에 대응한 영국정부의 관련부처 가이드북과 런던경찰청의 「아동학대대조사방침」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반적인 범죄 혐의 조사(수사) 책임 외에도 협력적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경찰은 아동학대에 대응한 다기관협력시스템에서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영국 경찰이 맡는 임무는 지역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의 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초기대응 과정에서 일반 지역경찰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는 한편, 아동학대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히 조직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의 임무가 구별된다. 전담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문적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다.

영국의 College of Policing에서⁸⁴⁾ 발행한 아동학대 매뉴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경찰관을 ‘대응 및 지역사회 경찰팀’(response and neighbourhood policing teams)과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고 있다.⁸⁵⁾ ‘대응 및 지역사회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에 초기 대응하는 지역경찰을 의미한다. 이 매뉴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지역경찰의 역할은 가

83) Child Abuse Investigation Policy, Metropolitan Police, 2012.

84) College of Policing은 2012년 NPIA(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의 후신으로 출범한 경찰 전문기구로서 경찰 훈련 및 개발 역할을 맡고 있다.

85) Guidance on Child Abuse, College of Policing, 2013, p. 25.

해자 위험관리상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 제공자 역할을 밝히고 있다.⁸⁶⁾

2. 지역경찰의 초기 대응과 임무

지역경찰이 아동학대 사안에 접촉하게 되는 통로는 가족구성원, 이웃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서이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계, 혹은 다른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나 첩보나 아동범죄 신고를 통해서이다.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학대 신고는 대부분 지정된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팀으로 연결되지만,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시민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관제실을 통해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취급자는 경찰 정보시스템을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초기 대응경찰관에게 그 정보를 전달한다.⁸⁷⁾

이와 관련하여, 영국 도셋(Dorset) 주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절차 매뉴얼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접수자가 경찰관을 현장으로 배치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고접수자는 먼저 과거 신고사례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외에도 보석 상태 여부, 민사 가처분 여부, 아동 접촉과 관련된 법원명령 여부 그리고 아동보호정보시스템 등을 체크한다. 그 후에는 아동이 아동보호계획(child protection plan)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해당 주소에 거주자 유무, 아동의 아동보호계획 상태 여부, 다른 아동학대나 가정학대 전력 유무, 피의자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⁸⁸⁾ 아동학대 신고 접수자가 취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이 사전에 피해아동 및 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아동학대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86) 위의 책, p. 25.

87) In Harm's Way: The role of the police in keeping children safe, HMIC, 2016, 제4장.

88) Child Protection and Abuse Investigation Policy and Procedure, Dorset Police, 2012.

아동학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가능한 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도 경찰은 주거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즉, 범죄의심이 있거나 아동에게 어떤 위해가 있다는 타당한 의심이 있을 때, 경찰관은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합법적인 진입 권한 행사라도 그것이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을 위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관은 그의 포켓 노트북에 진입행동을 취하는 사유를 기록하도록 권장된다.⁸⁹⁾

영국경찰의 진입권한은 PACE(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ection 17(1)(b) 조항⁹⁰⁾과 동법 17(1)(e)⁹¹⁾,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8 조항⁹²⁾에 법적 근거를 갖는다.

경찰이 초기 대응을 한 경우에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6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지방 정부당국에 통보하고 아동이 머물고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지방정부당국이 아동이 머물 곳을 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이다.⁹³⁾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경찰관은 초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한다. 이를 위해서 취할 일련의 조치들은 ▶ 피의자의 신원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확보하고, ▶ 피의자와 가정에 대한 정보 체크를 요청하고, ▶ 피의자가 말한 어떤 진술이나 행동을 기록하고, ▶ 증거 기

89)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nd Edition,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2009, pp. 70-71.

90)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PACE) 1984 section 17(1)(b) : 경찰관은 기소 가능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인 체포 목적으로 어느 구역을 진입하고 조사할 수 있다.

91) PACE 17(1)(e) : 경찰관은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구역을 진입하고 조사할 수 있다.

92) Children Act 1989 section 48: 응급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 아동 수색을 위해 영장을 받을 수 있다.

93)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p. 73-74.

록을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범죄현장조사원(CSI)을 배치하고, ▶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확보하고, ▶ CCTV 증거를 확보하는 것 등이다.⁹⁴⁾

경찰은 그들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을 ‘경찰보호’(protection)라고 한다. 경찰 보호는 경찰이 심각한 위험상황에 있다고 믿을 만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 권한이다.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6에서는 경찰관이 아동을 적당한 시설로 데려갈 수 있거나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병원이나 다른 장소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이 행사될 때, 아동은 경찰 보호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의 보호기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⁹⁵⁾

아동법 1989 section 46(5)에 따라서, 경찰관은 조사(질문)을 끝마친 후 ▶ 아동에게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판단이 들거나, ▶ 응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이 이뤄졌거나, ▶ 아동법 section 20에 따라 지방 정부당국이 수용공간을 제공한 경우, 아동을 경찰보호에서 해제해야 한다.⁹⁶⁾ 아동을 경찰보호에서 석방하는 어떠한 결정도 아동사회 복지 서비스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경찰관의 중요한 역할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는 범죄 조사뿐 아니라, 아동의 신변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포렌식 의료 검사를

94)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p. 74-75.

95) 경찰은 당장 법원의 명령이 없이도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실을 지방정부당국에 알려야 하고, 지방 정부당국은 아동이 위탁보호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혹은 가정 내에 다른 가능한 선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96)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nd Edition,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2009, p. 79.

하기 전에 완전한 증거 보존이 요구된다.⁹⁷⁾

아동학대 사례에 초기 대응한 지역 경찰관은 해당 사례에 학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사례를 아동학대조사반(CAIU)에 넘긴다.⁹⁸⁾

제3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영국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은 공식 가이드북인 Working Together 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역사회에서의 다기관협력이 그 근간을 이룬다.⁹⁹⁾ 아동학대에 대응한 다기관협력의 주체는 지방정부당국(Local Authority), 경찰,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 전국아동학대방지연합(NSPCC)¹⁰⁰⁾ 등이 대표적이다.

1. 지방정부당국의 역할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당국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정부당국마다 아동보호 이슈를 취급하는 특별부서, 즉 아동보호팀(the child protection team), 아동 사회복지팀(the children's social work team), the safeguarding children's team 등의 부서들이 있다. 이들 부서들이 아동사회복지서비스(Children's social care) 부서로 통칭되며, 이 부서들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에 대

97)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p. 79-80.

98)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p. 87-88.

99) 이러한 사실은 런던경찰청의 「아동학대조사방침」에서도 확인된다. 이 방침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의 기회와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고 아동학대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다기관적인 접근을 채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0) 참고로 NSPCC는 민간단체로서 아동학대 혐의 사례를 처리할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칙허장(Royal charter)에 의거하여 그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법원에 아동을 보호하도록 청원할 법적 권한이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NSPCC가 지방정부당국을 대신하여 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응한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응한 지방정부당국의 역할은 곧 지방정부당국에 속한 사회복지부서 소속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지방정부당국의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에 대응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그 임무는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정부당국 사회복지사는 학대의심 사례가 접수된 당일 하루 안에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조사를 실시한다. 첫째는, 아동에게 어떠한 결핍(need)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¹⁰¹⁾ 둘째는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¹⁰²⁾ 이러한 조사는 학대사례 신고가 이뤄진 후 4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¹⁰³⁾ 이 조사를 통해 해당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의 결핍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정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지방정부 당국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당국의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은 대개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17 규정에 따른 조사를 통해, 해당 아동이 어떠한 결핍(need)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아동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 소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7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학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또는 어떠한 성적 학대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 당국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알린다.

101)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17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102)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7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103) 대개 조사에는 사회복지사가 피해 아동 부모, 다른 전문가들(예컨대, 피해아동의 교사, 의사)과의 회의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는 해당 아동의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에게 가해 피의자가 다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 보호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아동이 지방정부 당국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17에 따른 평가라고 부른다. 평가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아동의 결핍 상태에 대한 평가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평가 대상에는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아동이 어떠한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지방정부 당국은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한다.

2. 경찰 아동학대조사반(CAIU)의 역할

가. 주요 역할과 임무

영국경찰은 경찰 자체에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조사반(Child Abuse Investigation Unit : CAIU)을 두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동보호조사반(child protection investigation unit), 아동보호팀(child protection team), 아동보호반(child protection unit) 혹은 아동학대조사팀(child abuse investigation team CAIT)으로 불리기도 한다.¹⁰⁴⁾

지역에 따라서 아동학대조사반의 구조의 차이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학대보다 더 넓은 영역의 범위를 다루는 조사반(Unit)을 갖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의 범위를 넘어서 가정학대와 성범죄자 관리와 같은 이슈를 포함하는 경우이다.¹⁰⁵⁾

런던경찰청의 경우, 아동학대조사팀(CAIT)은 전문가범죄부(Specialist

104)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46.

105) Guidance on Child Abuse, College of Policing, 2013, p. 26.

Crime Directorate)에 속한 작전지휘부서(Operational Command Unit)이다.¹⁰⁶⁾ 전문가범죄부((Specialist Crime Directorate)에 아동학대조사지휘부(Child Abuse Investigation Command)가 있고, 19개의 아동학대조사전담반(Child Abuse Investigation Team)이 있다. 19개의 팀이 런던의 32개 자치구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¹⁰⁷⁾

아동학대조사반(CAIU)의 임무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 수사이다. 여기에는 피의자가 아동의 보호 책임자인 아동학대 범죄 조사를 포함한다. 정부의 공식 아동학대 대응 다기관협력 안내서인 ‘Working Together’에서는 아동학대조사반(CAIU)이 가해자가 신뢰관계에 있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¹⁰⁸⁾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사법적 조사를 포함하여 아동학대사례를 조사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학대조사전담반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전문 조사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정폭력, 아동실종, 아동인신매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범죄 사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감당한다.¹⁰⁹⁾

아동학대조사반(CAIU)의 활동은 지방정부당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서와의 협력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사례는 아동보호 이슈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조사활동이 다기관 협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전문가로서 아동학대조사반(CAIU) 조사원은 다기관 협력활동에 조언을 주고 기여할

106) https://en.wikipedia.org/wiki/Child_Abuse_Investigation_Team

107) 런던경찰청에는 19개의 아동학대조사팀 외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5개의 전문가 section이 있다. 1) Major Investigation Teams: 아동 살인 및 가족내 복잡한 학대 사안 조사활동, 2) Paedophile Unit: 아동포르노 조사, 3) Hi-Tech Crime Unit: 인터넷 상의 아동학대 조사, 4) Safeguarding Children and Development Unit: 국회의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동반자관계에 관한 정보 및 지원 제공. 런던아동보호위원회(child protection committee)와 협력, 5) Ports Safeguarding Team: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영국 국경수비대와 협력관계에 있는 조사팀이 그것이다.(<http://content.met.police.uk/Site/childprotectionwhoware>)

108) 여기에는 부모, 보모, 가족구성원,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109)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p. 46-47.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¹¹⁰⁾

경찰이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협력기관은 지방정부당국의 아동사회복지서비스(Children's social care) 부서이다.¹¹¹⁾ 다른 기관들은 아동보호를 위한 다기관협력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기관으로는 건강 전문가들, 학교직원과 자원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응한 다기관협력체계에서 경찰의 주요 역할은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7에 따른 조사, 즉 ▶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과 ▶ 다기관협력체계에서 기관간 협력주체로서의 역할로 요약된다. 협력주체로서의 역할에는 관련기관에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이러한 역할은 경찰이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다는 데 근거한다.

나. 선발과 훈련

아동학대조사반(CAIU)은 조사 전문가로서 엄격한 선발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선발 심사에서는 전문가적 기준 충족 여부, 건강상의 문제 유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아동 접촉제한 조치를 포함한 민사 명령 유무, 지원자와 관련된 아동 관련 기록¹¹²⁾ 등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동학대 조사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들은 관리능력 심사를 받아야 하고 정신건강 조회 결과도 고려된다.

110) 위의 책, p. 46.

111) 아동사회복지서비스(Children's social care) 부서는 특정 부서 명칭이 아니라, 지방정부 당국의 아동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부서를 통칭한다.

112)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 48.

아동학대조사반(CAIU)은 그들에게 부여된 조사임무에 맞는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학대조사전문가 개발프로그램(Specialist Child Abuse Investigator's Development Programme: SCAIDP)은 CAIU 직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 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¹¹³⁾

다. 아동학대조사반의 아동학대 조사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조사반(CAIU)에게 부여된 대표적인 역할은 아동학대 혐의 조사자로서의 역할이다.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례는 아동학대조사반으로 넘겨진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조사반이 벌이는 조사활동에는 지방정부 당국, 학교, 보건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학대가 일어난 장소 혹은 아동이 거주하는 장소를 방문하고, 의료기관에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뢰하고,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고,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포함한다.

경찰은 증거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기록될 수 있고,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인터뷰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아동에 대한 인터뷰가 이뤄질 때,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도 있다.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서 경찰과 지방정부당국 사회복지사의 공동조사가 요구되면(즉, 아동법 section 47에서 요구하는 조사), 그에 따른 절차로 합동방문이 이뤄진다.¹¹⁴⁾ 합동방문의 목적은 아동을 대면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방문은 아동이 범죄

113) 위의 책, pp. 50-51.

114) 영국정부 관련부처의 다기관협력 아동학대 안내서인 Working Together에서는 아동법 section 47에 의거하여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가 지역의 합동조사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범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라는 의심은 있으나,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만한 정보가 없을 때나 아동의 인지적 발달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이뤄진다. 아동학대조사반(CAIU)은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 및 다른 기관에 아동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¹¹⁵⁾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대응 다기관협력체계에서 경찰관은 연계 협력 주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역할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경찰관은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필요가 있는 아동과 가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에 연계할 의무가 있다.¹¹⁶⁾ 아동이 어떠한 해를 당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경우나 아동의 결핍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에 구두와 문서로 그러한 우려를 전달한다. 이 때 경찰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아동의 니즈(Need)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어떠한 심각한 해를 당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3. 아동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검토협의회

지방정부당국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아동법 section 47에 따른 조사)한 후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¹¹⁷⁾ 아동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s)를 소집한다.

115)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 94.

116) 위의 책, p. 95.

117) 이미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지만, 이러한 우려가 다뤄지지 않았을 때, 가정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때, 아동에 대한 응급보호명령이 부여되었을 때, 아동학대 가해 전력자가 가정에 합류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예컨대 아동의 모친이 성 범죄자로 알려진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이미 다른 어떤 지역에서 아동보호플랜을 받은 아동이 해당 지역으로 영구적으로 이사를 왔을 때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동보호협의회 소집목적은 아동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안전을 위해 향후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며, 별도의 아동보호플랜을 수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동보호협의회에는 아동, 가족 구성원,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¹¹⁸⁾ 관련기관 전문가에는 지방정부당국 사회복지사와 경찰 외에도, 학교, 보건의료기관, 교정기관 전문가들이 포함된다.¹¹⁹⁾

아동법 section 47에 따른 조사, 즉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하고 있거나 그럴 개연성이 의심되는 데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아동학대조사반(CAIU) 경찰관은 모든 아동보호협의회에 참여한다. 이때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서비스 부서는 아동법 section 47에 따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요약하여 아동보호협의회에 문서형태로 제공한다. 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다른 기관 대표자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정보, 그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보호 능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¹²⁰⁾

아동보호협의회에서는 아동에게 아동보호플랜(child protection plan)을 수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아동보호플랜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아동에게 아동보호플랜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아동에게는 별도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배정된다.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응급보호명령, 보호명령, 혹은 감독 명령 등이 그것이다.

118)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p. 98-99.

119) 부모는 대개 아동보호협의회에 참석이 허락되지만, 만약 가정학대 이슈가 있다면, 부모는 따로 참석하도록 요청된다. 아동보호협의회 의장은 예외적으로 부모가 학대 혐의자인 경우나, 부모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부모의 협의회 참석을 거절할 수 있다.

120)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p. 98-99.

응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s)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법원은 이 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아동에 대한 제한적인 부모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 책임은 아동의 복지적 결핍에 제한된다. 누구든지 법원에 응급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응급보호명령은 지방정부당국에 의해서 신청된다.

법원은 응급보호명령을 통해서 지방정부당국이 아동 수색상의 목적에서 법원명령에 명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법원은 사회복지사의 아동 접근이 거절당했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사회복지사를 지원하여 아동을 분리할 수 있다.

아동보호협의회 소집 후에는 아동보호검토협의회(Child protection review conference)가 소집될 수 있다. ‘Working Together’에 따르면, 첫 아동보호검토협의회는 초기 아동보호협의회 개최 후 3달 내에 열려야 한다. 아동보호검토협회의 소집목적은 아동이 여전히 심각한 위해 위험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공식적인 아동보호플랜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핀다. 다음번 아동보호검토협의회는 아동이 아동보호플랜에 참여하는 동안 매 6개월 내에 열려야 한다. 경찰은 모든 아동보호검토협의회에 참여한다.¹²¹⁾

4.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지방정부당국, 경찰, NSPCC(전국아동학대방지협회)과 함께 영국에서 아동학대를 다루는 대표적 책임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121)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 100.

개정된 아동법(2004) section 13에서는 각 지방정부당국에 하나의 지역 아동보호위원회(LSCB)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지역아동보호위원회에 적어도 한 명의 지방정부당국 대표자와 기타 위원회 파트너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파트너에는 지방정부당국 구역 내 지방자치구의회(district councils), 경찰수장(the chief officer of police), 보호관찰기관(the National Probation Service), 지역 청소년 범죄 팀(the Youth Offending Team), 의료보건서비스 기관 등이다.¹²²⁾ 즉,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모든 지방정부 당국에 설치되어 있는 다기관 협력체 성격을 띤다.

아동법(2004) section 14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의 목표는 지역에서 아동의 안녕을 위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일들을 조정하고, 그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일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해당 지방정부당국 지역 내에서 아동의 복지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지방정부당국과 위원회 파트너들이 수행한 일의 효과성을 평가하며, 지역 내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¹²³⁾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다기관 협력 프로토콜¹²⁴⁾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¹²⁵⁾ 다기관협력활동에서 다기관 협력 프로토콜은 각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기대하는 서비스 유형과 질적 수준에 대한 타협안으로서, 다기관협력체계에서 필수적이다.

122)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M Government, 2015, 제3장.

12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M Government, 2015, 제3장.

124) 서비스 수준협정(Service level agreement(SLA))이라고도 함.

125)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009, p. 61.

5. 지방정부당국과의 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당국은 아동법 section 17에 따라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평가 책임이 있고, 아동법 section 47에 따라 심각한 위해를 당할 개연성이 있거나 위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조사 책임이 있다. 지방정부당국은 아동법 section 47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지방정부당국의 조사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책임은 경찰의 몫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서비스 부서와 경찰의 역할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 경찰과 아동 사회복지 서비스 부서는 각각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해와 관련한 조사에서 서로 구별되는 역할을 갖고 있지만,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¹²⁶⁾

제4절 영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상의 특징은 아동학대 대응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들의 협력체계에 있다. 영국정부는 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지침서인 Working Together를 만들고 기관간의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응한 다기관협력의 주체는 지방정부당국(Local Authority), 경찰,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전국아동학대방지연합(NSPCC)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지방정부당국에 주어져 있다. 이와 비교해서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서비스 지침을 개발하여 지방정부에 제시하는 책임을 진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의 범위

126) Child Protection and Abuse Investigation Policy and Procedure, Dorset Police, 2012.

내에서 재량권한을 행사하며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영국 경찰이 맡는 임무는 지역경찰과 아동학대조사반 임무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초기대응 과정은 일반 지역경찰이 맡는다. 아동학대 사례에 초기 대응한 지역 경찰관은 학대 우려가 있는 사례를 아동학대조사반(CAIU)에게 넘긴다.

아동학대조사반은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한다. 또한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정폭력, 아동실종, 아동 인신매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범죄 사안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감당한다. 아동학대조사반의 아동학대 조사활동은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아래 이뤄진다.

아동학대에 대응한 다기관협력체계에서 경찰의 주요 역할은 아동법(Children Act 1989) section 47에 따른 조사, 즉 ▶ 아동이 심각한 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과 ▶ 다기관협력체계에서 기관간 협력주체로서의 역할로 요약된다. 협력주체로서의 역할에는 관련기관에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이러한 역할은 경찰이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다는 데 근거한다.

제5장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제1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 비교 분석

2015년 12월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재점검하고 2016년 3월 새로운 내용의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중심이었던 기존 대책을 강화하면서 ‘예방’과 ‘조기발견’을 추가한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에 발맞추어 경찰청은 우리 사회의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밝히는 한편,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사안을 상시 점검하고 보호지원업무를 전담할 「학대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6년 4월 경찰청은 ‘여청경찰 비전 선포식’과 함께 학대전담경찰관 출범을 공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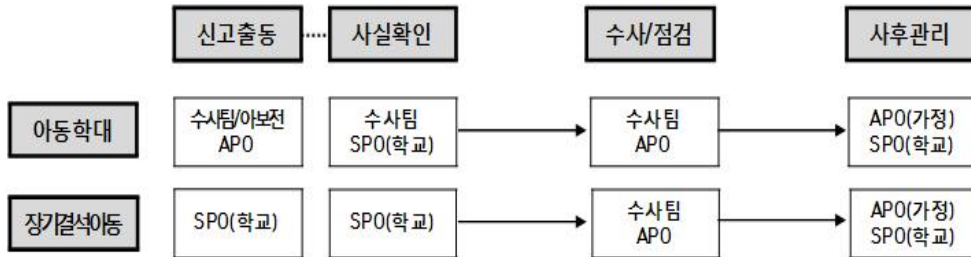
조직적 측면에서 학대전담경찰관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신규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확대한 전담조직이다. 기존 가정폭력경찰관 138명에 신규 211명의 추가인력을 자체적으로 조정 증원한 것이다. 일선 경찰서당 평균 1.4명의 학대전담경찰관이 배치된 셈이다.

학대전담경찰관 출범은 지난 2012년 2월 발족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2015년 2월 발족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더불어 삼각 전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여성청소년 경찰전담체계’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경찰청은 보도자

료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학대전담경찰관의 삼각전담체계는 각 전담체계간의 긴밀한 협업과 연계를 통하여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²⁷⁾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3각 전담체계는 특별히 아동학대와 장기결석아동 사안의 주요 단계, 즉 신고출동과 사실확인 단계, 수사 및 점검단계, 사후관리 단계에서 각각 그 역할을 맡음으로써 긴밀한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 5-1>은 사안별·주요 단계별 담당 전담주체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5-1> 아동학대 대응 학대전담, 학교전담, 여청수사팀 협업체계



출처: 경찰청 브리핑(2016.4.21.)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출동은 여성청소년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전담경찰관이 대응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 은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맡으며, 수사/점검은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대전담경찰관이 진행하고, 사후관리는 가정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이,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맡도록 그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127) 경찰청 브리핑, “우리가 바로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가족’입니다!!-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삼각 여성청소년경찰체계 출범”, 2016.4.21.

장기결석아동 사안의 경우, 신고출동과 사실확인 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맡고, 수사/점검은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맡으며, 사후관리는 가정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이,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맡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렇듯 사안별 및 대응단계별로 복수의 전담조직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더욱 안전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

본문적으로 이 보도자료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를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 점검과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역할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과 비교하여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호·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는 경찰청 관련부서의 「학대전담경찰관(APO) 운영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 운영계획」은 비록 계획단계의 논의로서 그 임무가 공식적으로 천명되기 전의 문서라는 점에서 한계가 없지 않으나, 그 임무 설정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의 초기 역할 인식 혹은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학대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¹²⁸⁾ 이 절에서 학대전담경찰의 임무에 대한 분석은 경찰청 보도자료와 「학대전담경찰관 운영계획」에 기초해 있다.

128) 현실적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에 관한 공식적 언급과 함께 구체적인 임무가 나열된 문서는 경찰청 보도자료와 「학대전담경찰관 운영계획」 뿐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대전담경찰관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사안에 대한 예방, 수사연계,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경찰관으로서 성격 지워지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 유관기관과 현장활동·점검형 업무 수행 ▲ 학대위험대상자 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 ▲ 학대 가·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등 사후지원 ▲ 아동 및 노인보호시설 등 정기적 점검 및 인식 전환 교육 등으로 제시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 부분에서는 아동학대 사안과 관련한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로서, ① 학대의심 신고시, 학대 정황 등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동행 출동 ② 학대 위험·우려아동 관리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 ④ 아동학대 발견 제고를 위한 범정부 추진 활동 점검 협조 ⑤ 유치원 및 아동보호시설 등 점검 및 예방활동 전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학대 정황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동행 출동

세부 운영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시, 학대 정황 등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동행 출동’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의 현장출동은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응급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유관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동 계획서는 신고 내용별로 출동 주체들을 구별하여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고 있는데,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응급학대 신고시에는 지역경찰 외에도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대전담경찰관이 합동으로 출동하고, 교육기관이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신고가 된 경우에는 학대전담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합동으로 출동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하여 경찰의 도움이 요청되는 상황에서는 지역경찰과 함께 학대전담경찰관이 출동하도록 그 담당 역할을 배정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 의심 신고내용별로 지역경찰과 함께 전담경찰관(학대 전담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합동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초기 현장출동 단계에서 학대전담경찰관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참여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즉각적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미국과 영국경찰과 비교하면, 사안별 및 주체별 역할분담이 분명하고, 그 초기 대응은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경찰의 경우, 지역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사례에 범죄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가 요구될 때, 전담수사팀에 연계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찰의 대응은 초기 현장출동 단계에서부터 학대전담경찰관이나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영국경찰의 초기 대응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경찰의 개입이 요구되는 아동학대 사안에 지역경찰, 여청수사팀, 학대전담경찰관 등 세 주체가 합동으로 출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인지 여부는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일차적으로 지역경찰이 개입하고 범죄 수사나 전담팀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에 여청수사팀이나 학대전담경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다. 단, 지역경찰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2. 학대위험·우려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

학대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 가운데 두 번째는 ‘학대위험 우려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이 두 번째 임무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아동학대 관리체계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의 임무가 경찰에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이 임무

의 중요성을 높이고, 현실적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이 임무는 학대위험 아동을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 정도와 수준에 맞추어 차별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학대 위험정도의 구분은 A(위험), B(우려), C(관리)로 구분되는데, 학대 위험(A) 등급의 선정기준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회 이상 이뤄진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에서 학대의심 신고 및 재발 우려 통보한 경우이다.

모니터링 임무는 학대 위험(A) 등급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려(B)등급과 아동학대 취약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관리(C)등급도 모니터링이 대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사후관리가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대전담경찰관의 모니터링 수준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모니터링은 아동학대 조기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아동학대 요소가 취약한 대상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운용이 비효율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모니터링 방식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모니터링 임무는 보다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학대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듯 ‘적극적인’ 아동학대 위험 아동 모니터링 임무는 미국과 영국 경찰의 대응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임무는 국내외적으로 아동사회복지서비스기관(미국은 아동보호서비스, 영국은 지방정부당국의 아동사회복지부서,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무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임무는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아동학대 대응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가 주요 임무로 등

장한 배경에는 최근 아동학대 사안들이 장기결석아동들에서 더욱 자주 나타났고 그에 따라 장기결석아동 등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학대전담경찰관이 학대 위험 아동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은 결국 학대위험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임무가 주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모두에서 각각 이뤄진다는 것이다. 두 기관에서 각각 모니터링이 이뤄짐에 따라서 한 대상자에 대한 중복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학대전담경찰관 운영계획」에서는 중복 모니터링으로 인한 피해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사례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의 학대위험 아동 모니터링 임무는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위험 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이 그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를 갖는다. 영국의 아동학대 대응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아동학대검토협의회를 통하여 6개월 단위로 아동학대 우려사항의 해소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외에도 학대전담경찰관이 학대위험 아동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을 임무를 맡음으로써 재학대 발생율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모니터링 임무는 그 성격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학대전담경찰관이 주요 임무로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 유관기관 협력 지원

학대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세 번째 임무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임무이다. 여기에서 유관기관은 대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동행 출동하는 것이다. 경찰의 동행출동 비율은 지난 2013년 8.4%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3.7%로 높아졌다. 경찰은 2017년 35.3%의 동행출동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기적인 사례회의 등을 통해 학대위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는 것도 협력 사항에 속한다. 영국 경찰의 대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다기관협력활동의 중심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이다. 그것은 아동학대 위험사례(혹은 우려사례)에 대해서 영국 지역경찰이 확보한 정보들을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아동보호협의회에 참여하는 다른 유관기관 참여자(학교, 보건의료기관, 교정기관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포함하여 유관기관 협력 임무는 미국과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전담조직의 주요 임무, 즉 조사 임무에 추가되는 주요 임무에 속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다른 협력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7조의 2(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경찰이 아동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다가 아동학대 의심 사유가 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동법 제27조의 2 ②항에 명시한 대로 경찰이 임시조치 신청시 그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사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내용에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이다. 경찰의 교육자 역할은 미국

경찰이 아동학대 대응에서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경찰은 공공안전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활성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의 교육자적 역할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부처 활동 협조

학대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네 번째 임무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부처 활동 협조이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우려 대상 아동으로서 장기결석아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활동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미국과 영국의 경찰은 일찍이 장기결석아동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범죄와 무질서법」(1998) section 16(3)항은 경찰이 공공장소에 있는 무단결석 의심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 있고, 경찰은 「교육 및 학생지도법」(2006) section 105에 근거하여 무단결석 학생 부모에게 벌금고지서 발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무단결석 아동을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 및 지자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및 현장동행 출동 요청 협조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활동이 될 수 있다.

제2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 평가

아동학대 대응에 대응한 미국과 영국경찰의 역할은 지역경찰과 전담조사반의 역할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범죄행위 의심이 있는 아동학대 사례 조사는 소수의 아동학대 전담조사반이 맡고, 학대 사례 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활동은 거의 대부분 순찰경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학대 전담조사반의 명칭은 지역경찰청별로 각기 다르다. 또한 영국의 경우,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학대(범죄행위로서의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조사반(CAIU)이 맡는다. 런던의 경우, 19개의 아동학대조사전담반이 32개 자치구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아동학대 조사가 아닌 초기대응은 지역경찰이 맡는다. 즉, 미국과 영국에서 아동학대에 대응한 전담경찰조직은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전담경찰조직이 조사활동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학대전담경찰관 임무에는 아동학대 조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경찰전담조직과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에 아동학대 조사 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까닭은 지난 2015년 2월 경찰의 성폭력근절종합대책에 따라 기 운영 중이던 성폭력전담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출범하여¹²⁹⁾ 경찰 전담체계의 한 축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대상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서 별도로 학대전담경찰관이 아동학대 조사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이다.

129) 경찰청 브리핑, 2015년 2월, “경찰청,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경찰전담조직의 임무에서 아동학대 조사 임무가 포함되지 않은 반면,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및 가정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임무가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 학대 고위험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임무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제도가 갖는 특성으로 꼽힐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학대전담경찰관제도는 미국과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전담경찰조직이 맡고 있는 주요 임무인 아동학대 조사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반면,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및 가정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임무가 특별히 부여됨으로써, 외국의 아동학대 전담조직과는 차별성이 있는 ‘한국적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학대 고위험 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 임무는 경찰의 임무라기보다는 아동학대 주무기관인 아동사회복지서비스기관(미국의 CPS, 영국의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사후관리 임무에 속한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 사례 사후관리를 맡고 있고 있지만, 최근 장기결석아동 등 학대 고위험 아동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리주체로서 경찰의 역할이 조명을 받게 되고, 경찰이 학대 고위험 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이러한 임무를 학대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로 삼은 것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데 있다. 최근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학대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아동 및 가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학대전담경찰관 인력 충원은 이러한 임무의 효과적 수행 및 학대전담경찰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요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에서 드러나는 특성은 다기관 협력 및

지원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학대 고위험 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 임무의 성격은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역할(사례 사후관리)을 경찰의 공권력을 통해서 협력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에서 경찰의 다기관 협력적 접근은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그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다기관 협력적 특성을 띤다. 영국의 아동학대 전담부서인 아동학대 조사반(CAIU)의 주요 역할에는 조사자로서의 역할 외에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를 비롯하여 아동보호협의회 참여주체들과의 협력주체로서의 역할이 부각된다. 아동학대 대응에서 다기관 협력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에서 다기관 협력의 임무는 전술한 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현장 동행 출동, 학대 고위험 아동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교육부, 지자체, 보건복지부의 학대 고위험 아동 조기발견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다기관협력적 접근의 중요성과 연계협력 주체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다기관 협력적 임무는 ‘한국적 학대전담경찰관 제도’의 특성으로서 더욱 강조되고 향후 그 범위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임무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의 다기관 협력의 임무에서 남는 과제는 연계협력의 질과 내용의 문제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경찰의 주요 협력대상은 아동학대 대응 주무기관이다. 즉,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영국의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요 협력대상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의 다기관 협력의 임무는 제도적 틀 위에서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과 아동학대 대응 주무기관과의

협력의무는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에 근거하여 주별로 아동보호서비스(CPS)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 관련부처 공식 협력 매뉴얼인 'working together'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내용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주체의 하나인 지역아동보호위원회(LCSB)의 주요 책임은 다기관 협력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기관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개선대책

1. ‘범죄로서의 아동학대’ 행위 명확화

이 연구의 제2장 제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구분은 모호하고 그 개념은 불명확하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는 새로운 범죄유형이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기존의 상해죄나 폭행죄 또는 강간죄 등의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괄해서 아동학대범죄로 범주화한 것에 불과하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고스란히 아동학대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는 서로 차별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률상으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러 연구자들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개념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를 위한 측면에서의 아동학대는 그 유형과 범위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아동학대의 개념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아동학대범죄를 정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동보호의 측면에서 아동학대는 다소 불명확한 경우도 허용되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제17조)를 위반한 경우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들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에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구분의 모호성과 아동학대 개념의 불명확성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연방법에서는 학대와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은 “아동의 사망,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 또는 성적 학대와 착취를 야기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근래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아동을 심각한 위해의 상태에 처하게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연방법에 기초하여 각 주법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 및 방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개념의 불명확성과 적용 가능성의 문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필요 적절한 개입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즉 범죄)으로서의 아동학대와 사회복지차원의 보호서비스 대상으로서 아동학대의 구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에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응급조치 대상 범위 확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제한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이나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¹³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1조에 의한 현장출동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인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학대행위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제12조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다.¹³¹⁾

3. 유관기관 협력 지원 임무의 원칙 필요

아동학대 대응에서 경찰의 다기관 협력적 접근은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케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그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다기관 협력적 특성을 띤다. 아동학대 대응에서 다기관 협력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에서도 다기관 협력 및 지원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다기관협력적 접근의 중요성과 연계협력 주체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다기관 협력적 임무는 ‘한국적 학대전담경찰관 제도’의 특성으로서 더욱 강조되고 향후 그 범위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전담경찰관의 다기관 협력적 임무는 분명한 원칙 아래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동학대에 대응한 주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의 연계협력은 각 기관의 전문적

130) 송수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6, 167쪽

131) 위의 글, 168쪽.

업무영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경찰은 공권력과 범죄수사 영역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주체로서, 각각의 특성을 전제로 한 연계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학대전담 경찰관 운영계획상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로서 제시된 ‘학대 가·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등 사후지원’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임무에 속한다. 특히 학대 가·피해자 심리상담은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상담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책임에 속한다. 경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은 경찰의 전문성과 공권력 주체로서의 성격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 마련

아동학대 사안의 특성상 다기관 협력적 접근의 중요성과 효과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다기관 혹은 다분야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기관협력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간 역할이 명료하게 규정되는 것이고,¹³²⁾ 여기에서 기관간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기관간 프로토콜은 아동학대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

미국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 사회복지사의 협력 조사활동에 관한 공식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미시간주의 아동학대 대응 모델 프로토콜은 그 예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 설치

132) 효과적인 다분야 팀 프로토콜에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료한 기술 외에도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서술, 각 대응팀 구성원과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가이드라인, 각 팀이 참여하는 사례 유형을 위한 명료한 기준 등이 포함된다.(OJJDP,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Child Abuse, 2014)

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의 주요 역할은 해당지역 다기관협력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일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서 규정한 동행출동과 그에 따른 공동조사, 향후 확대될 두 기관간의 협력활동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두 기관간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단계, 현장조사단계에서 사안의 성격별로 각 기관의 개입여부와 조사주체, 연계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두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5. 가출상태 아동 대상 학대피해 여부 모니터링

아동청소년의 장기무단결석 및 가출행위와 학대피해의 상관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장기무단결석 및 가출상태 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장기무단결석 아동의 학대피해 사건을 계기로 장기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가출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가출아동 관리 주체가 경찰뿐이라는 점도 가출아동에 대한 주목을 요구한다. 아동 청소년의 가출행위는 가정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위기는 가족구성원간의 폭력과 학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경찰과 학대전담경찰관의 학대 피해 고위험 아동의 범위에 가출상태 아동을 포함시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상의 중심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가출청소년 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¹³³⁾

가출청소년을 발견한 지역경찰은 가출청소년을 귀가 조치시키기 전에 해당 가출청소년이 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조사 과정

133) 홍우석, “아동학대의 현주소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2016.4.11.), 한국여성변호사회, 78쪽.

을 거치고, 학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될 때에는 학대전담경찰관에게도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6. 경찰의 무단결석 아동 관리 근거 법안 마련

장기무단결석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은 최근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 사실들이 연이어 발견됨으로써 그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외 학계에서는 아동의 무단결석 행위(Truancy)가¹³⁴⁾ 약물남용, 다양한 범죄활동과 범죄피해, 심각한 행동장애 등과 관련하여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히는 다수의 연구결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경찰은 무단결석아동이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단결석 아동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2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3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학생이 무단결석하면, 바로 다음날 학생과 통화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과 통화가 안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무단결석 아동 관리뿐만 아니라, 무단결석 아동 관리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범죄와 무질서법」(1998) section 16(3)항을 통해서 경찰이 공공장소에 있는 학교 무단결석 의심을 주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경찰은 아동의 무단결석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134) 무단결석은 학교당국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모든 결석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도 무단결석학생(Truant) 단속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무단결석 아동 관리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무단결석 아동 부모에 대한 벌금형 조항, 무단결석 아동을 발견한 경찰관이 해당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 부여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단결석 아동 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보완, 즉 기존의 임무에 무단결석 아동 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무단결석 아동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7. 학대전담경찰관 인력 총원

지난 2016년 4월 출범시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은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 138명과 자체 인력조정을 통한 추가인력 211명, 총 34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각 경찰서당 평균 1.4명이 배정되어 있다.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정하였다고는 하나, 학대전담경찰관이 맡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업무 중 아동학대만 들더라도 학대 고위험 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업무 등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¹³⁵⁾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 1인당 모니터링 대상 아동과 가정폭력 가정의 숫적 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적은 인력 규모에 비해서 주어진 임무의 과다는 임무수행의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학대전담경찰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135)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전담경찰조직에게 부여된 임무는 아동학대 조사가 주어진 임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7장 결 론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의 대응으로서 지난 2016년 4월 공식 출범한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설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아동학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학대전담경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법률적인 규정과 금지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00년의 일이고, 아동학대범죄라는 개념은 지난 2013년 아동학대처벌법이 마련되면서부터 법률에 등장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인식상의 변화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전에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고 이에 대한 형사법기관의 개입도 오래 전부터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물론이고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경찰부서도 자리를 잡고 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경찰의 역할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과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의 역할, 특히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과 영국경찰이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주목했다.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임무는 거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조사임무에 쏠려 있다. 아동학대 사안에 조사 임무를 제외한 신고접

수 단계에서의 초기대응은 지역경찰의 임무에 속한다. 전담경찰은 아동학대 사안의 특성에 기초한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담당한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아동학대 주무기관인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PS), 영국의 지방정부당국 아동사회복지부서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지원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과 영국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역할은 조사자, 연계협력자의 역할이고,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학대전담경찰관에게 부여된 임무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학대전담경찰관이 아동학대 조사 임무를 맡기에는 이미 성폭력전담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있기도 하거니와 인적 규모도 작아서 그 임무에서 조사임무는 제외되어 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학대 고위험 아동과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임무이다. 거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이 더해져 있다. 이러한 임무 설정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적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가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의 특징은 다분야 협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안은 사회복지적 접근과 형사사법적 접근을 모두 요구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유관기관들, 즉 지자체,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법 집행기관의 협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이 한 데 모여 아동학대 사례를 평가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거기에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보제공자로서, 전문수사관으로서 참여한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다분야 협력적 접근은 이 사안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포함된 것은 다분야 협력적 접근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다분야 협력의 질과 수준이다. 아동학대

사안의 해결은 주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다. 끝.

참고문헌

<국내도서, 논문>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2014.
-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에 한 법제의 제·개정방향”, 국회의원 이연주/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자료집, 2013.12.6.
- 강동욱, 문영희, 『아동학대-법과 제도』, 2011, 청목출판사.
- 김성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및 재범방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14.
-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0.
- 송수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정념, “미국에서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 경찰법 연구, 제8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10.

이찬엽,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제10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 134호, 한국법학원, 2013.

홍우석, “아동학대의 현주소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 2016.4.11.

<국외도서, 논문>

Cross T. P., R. Spath, Evaluation of Massachusetts' Sexual Abuse, 1998.

Finkelhor, D. A. *Source book on Child Sexual Abuse*, Sage, Beverly Hills, CA. 1986.

Harshbarger S. "Prosecution is an appropriate response in child sexual abuse cas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 1987.

Jones L., T. P. Cross, & M. Simone, Interagency coordination in investigations of child abuse: Historical patterns and future dire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APSAC Colloquium, Orlando, FL. 2003.

Jütte S., H. Bentley, P. Miller, N. Jetha, How safe are our children?, NSPCC, 2014.

Kinnevy S., B. Cohen, V. Huang, R. Gelles, H. Bae, R. Fusco, Evaluation of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ve investigations to law enforcement in Florida : Ananalysis of Manatee, Pasco, and Pinellas counties, 2003.

- Maguire Edward R. “Polic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hild sexual abuse case attrition”,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 32 No. 1, 2009.
- Martin S. E., D. J. Besharov, *Police and Child Abuse: New Policies for Expanded Responsibiliti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1991.
- Pence Donna, Charles Wilson, *The Role of Law Enforcement in the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92.
- Radford 외,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K today*, NSPCC, 2011.
- Shapiro. L. R., M. H. Maras, *Multidisciplinary Investigation of Child Maltreatment*, Jones & Barlett Learning, 2016.
- Slaght E.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and law enforcement.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0, 2002.
- Theodore P. C., F. David, O. Richard, *Police Involvement in Child Protective Service Investigations :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Child Maltreatment*, Vol. 10, No. 3, August 2005.
- Tjaden P. G., J. Anhalt, *The impact of joint law enforcement child protective services investigations in child maltreatment cases*. Denver, CO: Center for Policy Research. 1994.
- Winterfeld, A. P., T. Sakagawa, *Investigation models for child abuse and neglect—Collaboration with law enforcement*. Englewood, CO: American Humane Association. 2003.

<보고서, 매뉴얼>

A Guide to New York's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2014.

A Guide to Reporting Child Abuse & Neglect, Kansas Department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3.

An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vestigative Practice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2010.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in England 2013-2014,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Child Abuse & Neglect Investigation, Anne Arundel County Police Department, 2015.

Child Abuse Investigation Policy, Metropolitan Police, 2012.

Child Protection and Abuse Investigation Policy and Procedure, Dorset Police, 2012.

Guidance on Child Abuse, College of Policing, 2013.

Guidance on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Safeguarding Children 2nd Edition,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2009.

How the Child Welfare System Work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Children's Bureau, 2012.

In Harm's Way: The role of the police in keeping children safe, HMIC, 2016.

Intervention Network(Report for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Waltham, MA: Brandeis University.

Holder Jr. Eric H., Karol V. Mason, Robert L. Listenbee,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Child Abus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 2014.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M Government,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M Government, March 2013.

「학대전담경찰관(APO) 운영 계획」(경찰청)

「경찰청 브리핑」, “우리가 바로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가족’입니다!!”,
2016. 4.21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미 연방법, 뉴욕주 아동서비스법, 미시간 주 아동보호법